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이달호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
|----------|--|

발의연월일 : 2021. 12. 22.

발 의 자 : 성원환·김명국·이달호·

김선욱·배효임·배철현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2.1.13. 시행)으로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고령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여비의 지급구분,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다.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 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고령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